의 안 번 호	제70호
의결 연월일	2020. 6. 22.

-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6월 15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0년 6월 15일

다. 상 정 일 자: 2020년 6월 2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100세행복과장)

가. 제안이유

O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논산시 봉안당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"공설봉안당"용어를 "양지추 모원"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수정(안 제1조~제2조)
-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추가(안 제3조제3항제4호)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~제6조)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